

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 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토보고서  
【유승용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4. 2. 26.

사회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

##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# 검토보고서

#### 1. 경과

의안 제307호로 2024년 2월 8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  
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# 2. 제안이유

주민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재활  
용품 수집인들의 지원계획 수립사항을 구체화하고, 교육과  
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에  
대한 사항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 수립사항(지원계획의 목표와 방  
향,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등) 신설
- 나. 관계 기관(관내 복지기관 등)과의 협력 조항 신설
- 다. 기타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정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입법예고(2024. 2. 9. ~ 2. 13.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주민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지원계획 수립사항을 구체화하고, 교육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에 대한 사항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### 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1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“안전과 보호”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각 호에 명시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였고,
- 안 제6조에 지원내용에 “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”을 추가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7조에서는 교육내용에 “올바른 재활용품 수집 등”을 추가하여 재활용품 수거장의 환경정비 및 미관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고,

- 안 제8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조항을 추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.

## ○ 검토결과

- 작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‘폐지 수집 노인 지원 대책’에 따르면 폐지 수집인은 하루 평균 5.4시간, 주 6일간 폐지를 주으면 한 달에 약 159,000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간당 수입이 1,226원으로 최저임금의 13%의 수준임. 또한 폐지수집 활동의 목적은 ‘생계비 마련’이 54.8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한편 우리 구 재활용품 수집인은 약 60명이며, 2023년 우리 구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에서도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비슷한 조사결과가 나타남.

### 2023년 영등포구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

구 分	1위	2위	기타
폐지줍기 목적	경제적 어려움(74%)	다른 할 일이 없어서(21%)	어울려 놀 곳이 없어서(3%), 기타(2%)
활동일수	5일 이상(56%)	3~4일(29%)	1~2일(15%)
활동시간	3~6시간(58%)	6시간 이상(22%)	하루 3시간 미만(19%)

-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생계를 위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참고 자료

1

##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 7. 23., 2011. 4. 28., 2014. 1. 21.>

2. “재활용가능자원”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(收去)된 물건과 부산물(副產物) 중 재사용·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[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(廢熱)을 포함하되,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]을 말한다.

2

## 폐기물관리법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,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8. 3., 2010. 7. 23., 2013. 7. 16.>

3

## 지방자치법

**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**제28조(조례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